##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5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6.

발 의 자:이종욱・신성범・박정하

이양수 · 김예지 · 송언석

박수영 · 김소희 · 이성권

이종배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·관세 또는 지방 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,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음.

그런데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.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금액이 1조 446억원에 이르고 그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태료 금액이 6,630억원으로 전체금액의 63.5%에 달함.

특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위 100명의 과태료 체납총액이 314 억원에 달하며 이 중 전국 최다 과태료 체납액은 16억원을 넘는 것으 로 나타나 고액·상습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한 제재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출국의 금지) ① 법무부장	제4조(출국의 금지) ①
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	
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	
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	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
	사람
<u>6.</u> (생 략)	<u>7.</u> (현행 제6호와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